

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868호)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11. 14. 고성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24. 11. 14.
- 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24. 11. 27. 산업경제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안전관리과장 김성영)

가. 개정이유

- 고성군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시 수당 지급 방법을 명시하고, 방재 활동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청구 시 불필요한 제출 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기준 등 규정(안 제8조)
- 인감증명서 등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사무 정비(안 11조관련 별지 제6호서식)
 - 보상청구서에 “인감증명서” 삭제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61조
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
 -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
- 예산조치: 2025년 당초예산 편성 예정
- 합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- 특이사항없음[복지지원과-38361(2024. 10. 2.)호]

4) 기타

- 가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4-1525호
 - 예고기간: 2024. 9. 30. ~ 2024. 10. 21.(20일간)
 -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나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다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라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마) 비용추계(미첨부 사유)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조정제)

○ 개정 목적

-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,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, 불필요한 서류 제출요구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검토 내용

- (안 제8조) 소집 등에 사항으로,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시 수당 지급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(안 제11조) 방재활동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청구시 불필요한 제출 서류(인감증명서)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, 적정하다고 판단됨.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, 불필요한 제출서류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 개정 목적 및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4. 11. 27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